



[

]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

1. 누가 얼마를 지원 받나요?

- 지원 대상 :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(법인의 대표이사 제외)가 10명 미만 사업장에
근무하고 있는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
 - 보험 성립일이 당해연도 이전인 사업장
 -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(매월 말일 기준)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
 -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
 - 보험 성립일이 당해연도인 사업장 :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(성립일 이후 3개월이
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) 근로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
- 국고지원액
 - 월평균보수가 135만원 미만 근로자 :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각 1/2 지원
 - ※ 예시. 월평균보수가 10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액(월기준)

구분	근로자				사업주			
	보험료	지원액	납부할액	연간지원액	보험료	지원액	납부할액	연간지원액
계	51,500	25,750	25,750	309,000	54,000	27,000	27,000	324,000
고용	6,500	3,250	3,250	39,000	9,000	4,500	4,500	54,000
연금	45,000	22,500	22,500	270,000	45,000	22,500	22,500	270,000

2.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별도 신청기한 없이 지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.
- **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미신고 사업장은 근로자의 보수를 확인할 수 없어 지원대상 판단이 불가능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필히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지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- 신청방법 :
 - 전자신고 :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<http://www.4insure.or.kr/>)에서 신청사항 입력
 - 서면신고 : 보험료지원신청서(동봉서식)을 작성하여 제출
- ★ 고객센터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
- 지원금 지급방법
 -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지원금 만큼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- ※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사업장(건설업본사, 건설공사, 벌목현장)의 경우 지원신청 및 지원금 지급 방법이 상이하니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!!

3. 알아 둘 사항

- 신청 사업장 중 지원사업장으로 결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공단에서 “보험료 지원 해당 통지서”를 보내드립니다.
- 고용보험 ·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해당되나 어느 한쪽에만 가입된 경우는 보험가입신고와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보험에 취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므로, 신규입사자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자격취득신고(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포함)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자격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달부터 지원됩니다.

★ 자격취득신고 관련 문의전화 :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,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